

# 美國關稅法 337條의 改正

Andrew A Meikle

(BSKB 辯護士·辦理士)

陳今燮 譯

(在美韓國辦理士·藥學博士)

(譯註：本稿는 1930年の 美國關稅法337條의 (a)項을 해설한 것인데 “被害要件”의 삭제 및 產業의 定義規定 삽입으로 美國提訴人の 輸入品에 對한 ITC武器化가 強化될 우려가 있으며, 한편으로 美國의 知的財產權을 획득한 외국인도 수입품에 대하여 ITC에 쉽게 提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I. 序言

지난 1988년 8월 23일 包括通商 競爭力強化法(Public Law 100-418)이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이중 337條는 物品을 美國에 수입하여 販賣할 때에 不公正한 競爭方法이나 行爲에 對한 救濟를 規定하고 있는 法이다.

改正 337條에 의하여 救濟를 얻기 위해서는 提訴人은 누구나 할것없이 제일먼저 不公正行爲의 영향 또는 傾向(Effect or tendency)이 美國產業에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立證하고 둘째로 그 美國產業이 美國內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efficiently and economically)으로 行해지고 있다는 立證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러나 改正 후 337條에서는 特許(發明·意匠·植物), 商標, 著作權 및 Mask Works의 知的財產權事件에 關한 것에 依한 337條에 依하여 救濟를 얻기 위한 要件에 對한 改正이 들어가 있다. 이중 가장 큰 3가지 改正事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종류의 知的財產權事件에 限하여 提訴人은 美國產業에 대한 被害를 立證하지 않아도 좋다.

(2) 上記와 같은 知的財產權 以外의 사항에서도 피해를 받은 美國產業이 美國內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行해지고 있는 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좋다.

(3) 어떤 종류의 知的財產權事件에 限하여 產業에 대한 用語의 定義가 挿入되어 있다.

## II. 被害要件條項삭제

改正전의 337條에서는 提訴人이 이 法의 위반에 對한 救濟를 얻으려면 不公正行爲 또는 不公正한 競爭法에 追加하여 그 行위의 영향 또는 경향이 美國산업을 과괴하는가, 或은 이 것에 對하여 實質적으로 피해를 주고 美國산업의 確立을 沮害하던가, 또는 美國의 상역 제한 또는 獨占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그러나 改正 후의 337條에 依하면 特許, 商標著作權, Mask Works등의 어떤 종류의 知的財產權에 關한 것에 限하여서도 美國산업에 생긴 피해의 증명을 要求하는 要件이 삭제되었다. 다만 이와 代置하여 提訴人은 特定物品이 美國에의 輸入, 輸入을 위한 販賣행위, 輸入후의 美國에서의 販賣를 立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被害要件의 삭제는 提訴人이 知的財產權의 被害로 생긴 被害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많

은 경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 337條를 침해품의 수입에 대하여 더욱 効率的인 武器로 할 것을 의도하여 行해진 改正이라고 볼 수 있다.

이 結果로 하여금 提訴人이 337條의 제소를 ITC(國際貿易委員會)에 제출하고 수행하는데 드는 費用이 많이 절감되었다.

한편으로 이 被害要件이 삭제됨으로 ITC 침해수입품에 關한 特許紛爭을 해결하기 为한 法庭外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刊行物의 Clark의 "The Future of Patent Based Investigation Under Section 337 After The Om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참조)."

### III. 產業반창要件의 刪除

改正전의 337條는 被害가 美國에서 効率的이고 또 經濟的으로 行해지고 있는 美國內 產業에 依하여 發生한 것의 立證을 提訴人에게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改正후의 337條는 提訴人은 產業이 美國에 現在 存在하는가, 美國에 確立하게 되고 있는 過程에 있음을 立證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삭제된 것은 산업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行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表示하는 要件만이다. 물론 ITC는 現在까지 美國 產業이 效率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337條의 救濟를 拒絕한 예는 없다. 따라서 이 改正點만으로 337條의 최종판단이 크게 영향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要件이 삭제되었기에 337條에 依한 提訴時에 提訴人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案

##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移轉

內

우리 協會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가 發明獎勵館의 移轉과 함께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 別館 2층 發明獎勵館內로 移轉 되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서울) 551-5571~2

### IV. 知的財產權에 있어서 產業定義의 挿入

改正전 法律에서는 337條에 있어서 產業의 用語에 依한 定義는 特別히 없었다.

그러나 改正후의 337條에서는 特許·商標, 著作權 및 Mask Works에 關한 知的財產權事件에서 關련되는 上記 知的財產權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商品에 關한 美國 產業이 現在 存在하든가 또는 確立되어지는 過程에 있는 것은 表示만 하면 提訴人은 337條의 救濟를 받을 수 있다. 即 改正후의 337條에 따른 美國 產業의 用語는, (1) 工場 또는 設備에 依하여 상당한 投資가 있는 것, (2) 勞動 또는 資本이 상당히 投入되어 있는 것, (3) Engineering, 研究開發 또는 Licensing 등이 知的財產權의 利用에 關하여 實質的인 投資가 있는 것 等을 포함하는 것으로 定義되고 있다.

이 改正에 依하여 知的財產權에 關한 國內 產業의 要件이 누그러져 國內 知的財產權을 所持하고 있는 外國企業도 ITC 利用을 하기 쉽게 되었다.

### V. 結言

上述한 바와 같이 337條의 改正으로 인하여 美國 提訴人의 費用이 그전보다 輒씬 절감되어 美國 提訴人이 이를 武器로 삼아 輸入商品에 依하여 더욱 재동을 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美國 知的財產權을 所有한 外國人도 이러한 知的財產權을 행사하는 곳으로 ITC를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外國人의 美國에 知的財產權 획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워싱톤 BSKB 特許法律事務所). <♣>